

#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안)

의 안 번 호	276
--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13. 04. 4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건명 : 「안산소나타」 철거 안

### 1. 제안사유

- (주)대우건설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안산시 상징 조형물 ‘안산소나타’에 결함 발견과 노후화 예상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조형물의 상태 및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점검(‘13. 1. 30.~2. 27.)을 실시함
- 정밀점검 결과, 조형물의 보수·보강이 불가능한 상황이며, 조형물의 변형 및 파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E등급(불량)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철거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위치 : 상록구 이동 616 (노적봉공원 앞 교통광장)
- 사업기간 : 2006. 9. ~ 2009. 4.
- 규모 : 상부 높이 30M, 하부 가로 20Mx20M, 지름 20M, 연면적 725.13m<sup>2</sup>
- 시공업체 : 오담문화기획
- 구조형식 : 상부-스틸파이프, 하부-철골·철근콘크리트조
- 사업비 : 1,815백만원
- 정밀안전진단 결과 : D등급  
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·보강이 필요하며, 사용 제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

## 【정밀점검 용역결과 주요내용】

- ▷ 현재 조형물의 상황이 반영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내력이 부족한 부재는 보강 및 재시공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나, 비정형으로 변형된 조형물의 구조검토는 매우 어려우며, 구조검토없이 보강하는 것은 불 가능한 상황임
- ▷ 조형물의 변형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, 추후 보수·보강없이 조형물 유지 시 추가적인 결함이 발생할 것이며, 최악의 경우 조형물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
- ▷ 조형물의 보수·보강이 불가능한 상황이며, 조형물의 변형 및 파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E등급(불량)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



### 3. 안산시 의견(2013.03.26. 공유재산 심의회 원안가결)

- 조형물의 보수·보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, 변형 및 파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E등급(불량)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임

-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며, 특히, 조형물이 상시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쪽으로 전도될 경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- \* 설치 당시 특수조명을 이용해 '생명의 노래'를 표현한다는 취지였으나, 운영과정에서 야간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위험이 우려된다는 여론 등으로 조명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( '11. 8. 전력량 변경신청 50kW → 3kW) 조형물 본래의 기능도 상실한 상태임

#### 4. 향후 일정

- 예산 확보(1회 추경) : '13년 5월  
※소요예상액 : 40백만원(철거비, 폐기물처리, 원상복구비)
- 철거 추진 등 : '13. 년  
6월

#### 5. 단위사업 세부계획 : 불임

- 조형물 「안산소나타」 정밀안전진단 검토결과(문화예술과)

#### 6. 관계법령 발췌내용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**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## ○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

- 제11조(공유재산관리계획)** ①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개정 2012.01.10>
-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. 다만, 공유림에 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(2-1)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	당 초			변 경			합 계			비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 득	계	건물 토지 조형물	4	4	28,108,000				4	4	28,108,000	
	1. 매 입 (신축)	건물 토지	2	2	24,308,000				2	2	24,308,000	
	2. 교환으로 취득	토지							-	-	-	
	3. 기타 취득	건물 공작물	2	2	3,800,000				2	2	3,800,000	
	계	건물 토지 조형물	2	2	1,182,000				2	2	1,182,000	
	4. 매각	건물 토지							2	2	1,182,000	
처 분	5. 멸실	건물 조형물	2	2	1,182,000	1	1	1,815,000	2	2	1,182,000 1,815,000	
	6. 양여	토지				-	-	-	-	-	-	
	사용 및 대부허가	건물			해	당	없	음				

## 2013년도 취득·처분대상 재산목록(2-2)

### □ 취득재산

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표시			추 가 정 액	취 득 시 기	취 사 특 유	취득대상 소유자	비고
	지목	소재지	수량					
	계							

### □ 처분재산

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표시			추정 가액	처분 시기	처분사유	처분대상 소유자	비고
	지목	소재지	수량					
	상록구 이동 616 (노적봉공원 앞 교통광장)	1	1,815,000			안전성 우려	안산시	조형물 멸실